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230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0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신한카드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3.6.30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제4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,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

◦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

- 유통회사 등에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및 신상품 개발 등에 활용
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
통계화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 관련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제4호,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,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